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가합52623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안형운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박흥규, 하지훈

변론 종결2020. 5. 28.

판결 선고2020. 7. 23.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91,034,518원과 그 중 489,831,109원에 대하여 2019. 4. 2.부터 2019. 5. 2.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8. 9.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8. 10. 31. 접수 제2102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 B는 2012. 12. 10. 및 2015. 5. 27. 피고 A을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관한 각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9. 4. 2. 중소기업은행에 피고 A이 변제하지 못한 1. 가.항 기재 대출금 491,691,55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구상금, 기발생 지연손해금, 법적절차비용은 491,034,518원(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인 사실, 한편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이사인 사실, 피고 A은 2018. 12. 25.부터 중소기업은행에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 B는 2018. 9. 21.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과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8. 10. 31. 접수 제210282호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1) 앞서 본 법리,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그 채권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위 각 보증약정의 주채무자인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의 대출금 이자를 2018. 12. 25.부터 연체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아가 피고 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2)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도근

판사이창원

판사방혜미

별지